

새 정부의 건설산업 노사관계 방향 : 건설현장에서 노사의 상생을 위한 공정한 노사관계 접근방안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
(jwjbpark@hanmail.net)

- I. 서론
- II.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규정 준수와 엄정한 법 집행
- III. 공동의 가치공유자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 IV. 결론

5

I. 서론

2022년 5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나라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윤석열 정부는 5년의 집권기간을 운영할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을 담은 철학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 발표했다.

국정과제에서는 의미는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투표로 반영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국정운영의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은 이념이 아닌 국민의 상식에 기반해 국정을 운영해 나가며,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국정목표 3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이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이 110대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제시된 국정과제는 향후 5년간 정책으로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런 정책기조는 산업현장에도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협력의 실현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위한 규정 준수와 엄정한 법 집행

최근 건설현장의 골조공정을 중심으로 야기되고 있는 근로자 채용강요와 타워크레인 임대차 과정에서 건설노조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불법·부당한 행태가 시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런 기대의 저변에는 건설현장에서 생산활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절실함이 내재돼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건설업이 공사를 하는 업(業)이라는 점에서 건설현장은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생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들의 협력과 원만한 관계는 상생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는 건설현장을 매개로 한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때로는 이해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협력이 필요하며, 협력을 위해서 때로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자신의 의견과 이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감수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건설현장을 생존의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와 건설사업주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에 필요한 접근방안에 대하여 제시한다.

1. 공정과 상식의 회복

공정과 상식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원칙일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할 가치이다.

공정과 상식은 서로 별개의 가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식에 맞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하지 않은 상황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공정과 상식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현장을 예로 들면 사용자인 건설사업주는 생산활동에 필요한 생산요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권리는 영업권으로 보호되고 있다. 법에 의해서 권리로 인정된 것이다.

이는 건설기계와 장비의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사용자는 가장 효율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요소를 동원한다.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본질적인 사용자의 권리이다. 이를 압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부당한 금전요구 등은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

법은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문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항상 병행하게 된다. 노동자를 채용하는 권리가 사용자에게 있지만, 그에 따라 요구되고 준수되어야 할 의무도 있다. 이와 함께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떠한 불법·부당행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공정한 채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규범화 한 것이 채용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건설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법으로 보호하는 권리와 강제되는 의무가 명확하고 확고하게 준수되어야만 한다.

2. 규정의 준수와 엄정한 법 집행

상식의 사전적인 정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나 판단력이다.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공존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상식이다.

상식 중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규범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식과 공정이 건설현장에서 발현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에 대한 준수가 필요하며,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집행이 수반되어야만 한다.

건설현장이 노동자와 사용자의 생존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협력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반면 근로조건과 임금, 일자리 확보 등의 과정에서 양자의 가치는 갈등과 충돌이 야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과 충돌이 상식에 기반해 공정하게 처리되면 서로에게 생길 수 양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식과 공정을 바탕으로 한 의견조율과 협력이 쉽지 않은 않다.

상식에 부합하는 협력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입되어야 할 규범이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 갈등과 충돌이 해결되는 것이 공동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 출범 이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0명의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새 정부 출범 시 추진되어야 할 노동개혁 과제에 관한 것이며,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 항목의 응답 비율이

III. 공동의 가치 공유자라는 인식의 전환 필요

26.0%였다. 이런 응답의 비중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노사관계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과 상식에 기초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규범의 준수와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1. 건설현장 공유하는 이해당사자로서 노사관계

건설현장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간 갈등과 충돌이 공정성이 담보되는 상식에 의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은 일방에게 상처와 양금을 남길 수밖에 없다. 법에서 규정하고 보호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제재가 따르기 때문이다. 제재를 통한 권리구제 과정에서 일방에게는 금전적, 비금전적인 부담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런 의미에서 소송을 통한 해결은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수단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상식과 공정에 따른 건설현장의 노사관계를 위해서는 이익을 공유한다는 실질적인 공동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건설현장이라는 인식이 정립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즉 노동자는 건설현장이 개설되어야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소득을 창출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 전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설업 입직자의 이전 경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다수의 입직자는 다른 업종의 근로자로 종사하다 은퇴하거나 자영업을 폐업하고 건설업에 입직하고 있다.

건설현장은 건설사업주에게도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공사를 수행하는 업이 건설업이며, 건설사업주는 공사의 수행을 통해서 존재가치를 보일 수 있고, 건설기업의 계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공사의 수행과정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된다.

이처럼 노동자와 건설사업주는 건설현장을 생존의 수단으로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원활한 유지와 공사의 진행이라는 가치가 그것이다.

결국 노동자와 건설사업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 해결은 건설현

장의 유지와 공사의 원활한 진행이라는 전제가 성립할 수 있어야만 의미가 있다.

2. 노동자 간, 사용자 간 공존의식

건설현장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공동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건설현장은 가치를 달리하는 노동자와 건설사업주가 존재한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노동자는 어떤 형태의 노조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 이는 대부분의 건설노조가 형틀목공과 철근공을 위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형틀목공과 철근공, 콘크리트공 등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이다. 이 공정은 공사기간이 가장 길고, 노동자를 많이 필요로 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건설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도 존재한다.

건설노조가 노조원의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한 강요와 압박에 그치지 않고 비노조원인 건설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야기된다. 구직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건설업 종사자에게 일자리 확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면 노동자로서의 가치와 가족의 생계가 침해되기 때문이다. 비노조원인 노동자도 생산활동의 동료라는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건설현장을 이윤창출과 건설기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매개라는 공유 인식은 건설사업주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도급 생산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건설현장은 상이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다수의 건설사업주가 동일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협력은 건설현장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종합건설업체의 공사원가 구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도급자는 건설현장 운영과 공사 진행의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는데, 이는 대부분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시공을 하는 건설업자는 원도급자, 즉 종합건설사업주가 아니라 전문건설사업주이다. 결국 노동자와의 갈등과 충돌은 대부분 하도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1 시공능력순위별 종합공사 공사원가(2020년)

(단위: %)

구분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현장경비	(기계경비)
1군(1~100)	24.76	3.95	61.31	9.98	(1.00)
2군(101~200)	20.39	4.59	65.04	9.97	(1.41)
3군(201~300)	16.80	7.50	63.75	11.95	(2.00)
4군(301~400)	17.35	7.22	64.71	10.71	(3.31)
5군(401~500)	15.47	8.29	61.71	14.53	(3.78)
6군(501위 이하)	20.01	12.00	53.44	14.55	(5.02)
7군(토목)	26.54	14.63	39.86	18.96	(8.88)
8군(건축)	31.71	11.34	47.40	9.54	(1.80)
9군(기타)	36.00	16.53	30.70	16.78	(6.02)

자료: 대한건설협회(2021), 2020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

노사의 갈등과 충돌이 하도급자에게 집중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도급자가 무관심하게 된다면 현장운영의 차질과 공사 진행의 지연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결국 동일한 건설현장을 공유하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상식과 공정에 기반하는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이해관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IV. 결론

새로운 정부는 상식과 공정을 국정철학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상식에 기초하는 노사관계의 형성은 실질적인 가치의 공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언적인 주장이나 공허한 가치의 제시만으로 갈등과 충돌이 극심한 노사관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건설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건설현장을 매개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현실적인 자각이 있어야만 비로소 공정한 노사관계의 구축이 모색될 수 있다.

건설현장의 유지와 공사의 진행이 전제될 때만 공동의 이해관계가 현실화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전제되어야만 상식과 공정에 따른 노사관계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상식과 공정이 무시되는 환경에서는 법적인 다툼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에 수반되는 개인적, 사회적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공정한 노사관계의 정착이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의 확산이 전제되어야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다.

공정한 노사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건설사업주의 역할과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전술한 것처럼 최근 건설노조의 행태는 채용과 타워크레인, 기계장비를 매개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자와 타워크레인 및 기계장비 조종사들은 노조원으로 가입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이런 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설사업주들 중에는 건설노조를 배제하고는 현장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현재의 여건이 크게 바뀔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다. 건설노조와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1. 대한건설협회(2021), 2020년 기준 완성공사 원가통계.